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563호(號) 1932(昭和 7)년 3월 26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42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12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특정
[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特定]의 건[件]) 중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2(昭和 7)년 3월 26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기간(期間)의 항(項) 「동(同) 7년 3월 31일까지」를 「동(同) 8년 3월 31일까지」로 개정(改
正)함.